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안내서

2016. 7

목 차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1
2. 신고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19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23
3-1 유치 의료기관	25
3-2 유치 업자	55
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72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83
6. 벌칙 등	90
6-1 시정명령 및 등록취소	91
6-2 과징금 및 과태료	93
6-3 신고포상제	97

1. 의료 해외진출 신고

1 신고 요건

- 신고대상자(법 제4조)
 -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개인 또는 법인)
- 신고범위(법 제2조)
 - 국내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함

법 제2조의 해외진출의 범위

-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바.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것(영 제2조)

유의 사항

- 법인의 경우,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 변경을 수행해야 함
 - 법인은 정관변경하고 해당 정관을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함(법 제4조 제2항)
- 신고서 내용 및 계약서 변경 등 주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함
 - 신고인은 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계약체결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영 제3조 제5항)

위반 시 벌칙사항

- 법정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 제29조제1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2조 제1호)
 - 신고확인증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법 제17조의 지원 등)을 받지 못함
- 허위신고의 경우
 - 의료해외진출 신고를 허위로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29조 제1호)

② 신고 절차

- (신고기한) 의료기관 진출 계약 또는 설립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영 제3조 제2항)
 -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신고서 작성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지원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변경된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아야 함

* [첨부 1-3] 변경통지서 서식 참조

- (신고접수기관) 보건복지부가 정한 지원기관(위탁기관)

③ 제출서류

-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갖추

개설주체	법인	개인
구비서류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 신고증명서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② 의료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③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예, 진출국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그밖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②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자료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의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예, 진출국가에서 발급한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그밖의 경우 해당 계약서 사본
	④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서 * [첨부 1-4] 사업운영계획서 예시 참조	③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 계획서 * [첨부 1-4] 사업운영계획서 예시 참조
	⑤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첨부 1-1] 신고신청서 서식 참조	④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첨부 1-1] 신고신청서 서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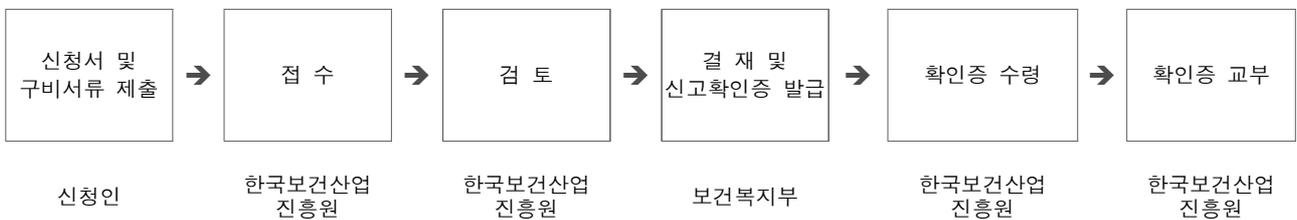
[참고] 의료기관 개설자 유형에 따른 정관변경의 절차

구분	조건	근거법령
의료법인	-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의료법 제48조제3항
학교법인	-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 의결 -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학교법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사립학교법 제45조
사회복지법인	-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서울대학교병원	-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제4조제2항
국립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병원 설치법 제4조제2항
재단사단법인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주무관청은 설립허가증에서 확인가능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지방의료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함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국립중앙의료원	-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국립암센터		암관리법 제28조제2항
공통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변경의 절차를 거쳐야 함	

4 등록절차

- 신고인은 아래의 절차를 거쳐 지원기관으로부터 신고증을 교부 받음
 -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원기관에 서면(방문, 우편) 제출
 - (접수 및 검토) 지원기관은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세부내용 확인 후,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5일 이내 신고인에게 보완요청. 지원기관은 신고인의 서류를 최종 확인 후 보건복지부로 신고확인증 요청
 - (확인증발급) 보건복지부는 지원기관이 제출한 신고내용을 검토, 결재하고 신고확인증 발급
 - * [첨부 1-2] 신고확인증 서식 참조
 - (확인증교부) 지원기관은 확인증을 수령하여, 신고인에게 우편으로 회신(신고접수 후 10일 이내)

< 의료해외진출 신고 절차 >



5 추진현황 및 계획

- (시행) 의료해외진출 신고 관련 서식 마련 및 내용 확정 진행 중으로, 지원기관 선정에 따라 관련 절차 및 서식 배포, 법 시행(6.23)이후 진출 건에 대한 신고 접수 시행 예정
 - * 기 진출 건에 대해서도 신고·접수 진행 예정
- (운영방식) '16년 하반기는 우편접수로 시행 후, '17년 상반기 지원기관의 관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고접수 시스템 도입 예정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제1호서식]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해당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진출구분	[]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 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행위
진출내용	국가 명칭	지역 명칭	
	진출형태	투자예정규모 (백만원)	
해외 연락사무소	명칭	연락처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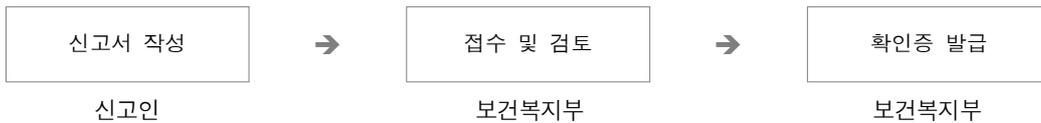
귀하

첨부서류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기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 (법인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신고인란의 "의료기관 종류"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2.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신고인란의 "의료기관 주소"에는 의료기관의 주소와 법인 소재지 주소를 함께 적으시고, "대표자 생년월일"에는 의료기관 대표자의 생년월일과 법인등록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3. 진출내용란의 "진출 형태"에는 단독투자, 합작/합자투자, 인수합병, 라이선싱, 프랜차이즈, 컨설팅계약, 위탁경영, 일괄수주, 기타로 구분하며 적으시고, 복수의 진출 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진출 형태를 모두 적습니다.
4. 진출내용란의 "국가 명칭" 및 "지역 명칭"은 영어로 적습니다.
5. 해외 연락사무소란의 "명칭" 및 "주소"는 영어로 적습니다.

처리 절차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1. 의료기관 명칭
2. 대표자 성명
3. 대표자 생년월일
4. 의료 해외진출 종류
5. 의료기관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료 해외진출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직인

의료 해외진출 신고사항 변경통지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통지인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직함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통지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작성방법

1. 통지인란의 ‘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 종류’, ‘의료기관 주소’,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에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에 작성되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적습니다.
2. 통지인란의 ‘의료기관 종류’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처리절차

통지서 작성



접수 및 검토



변경사항 등록

통지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

진출 사업명	(국문)				
	(영문)				
진출 의료기관	기관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연월일		
	소재지(주소)				
	의료기관 구분 (의료법 제3조)	1. 의원급 : ① 의원 ② 치과의원 ③ 한의원 2. 조산원 3. 병원급 : ① 병원 ② 치과병원 ③ 한방병원 ④ 요양병원 ⑤ 종합병원 : 100~300병상 이하(), 300병상 초과() ⑥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지정여부 (의료법 제3의5)	① 지정 ② 미지정			
	설립 구분	① 개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② 국공립 ③ 국립대학 ④ 학교법인 ⑤ 특수법인 ⑥ 의료법인 ⑦ 사회복지법인 ⑧ 사단법인 ⑨ 재단법인 ⑩ 회사법인 ⑪ 기타()			
	진료과목 (복수선택가능)	① 건강검진 ② 내과 ③ 소아청소년과 ④ 신경과 ⑤ 피부과 ⑥ 성형외과 ⑦ 정형외과 ⑧ 신경외과 ⑨ 산부인과 ⑩ 안과 ⑪ 이비인후과 ⑫ 비뇨기와 ⑬ 재활의학과 ⑭ 가정의학과 ⑮ 마취통증의학과 ⑯ 영상의학과 ⑰ 진단검사의학과 ⑱ 한방 ⑲ 치과 ⑳ 일반외과 ㉑ 정신과 ㉒ 기타()			
	의료 해외진출 전담부서 여부		인력 현황	전체 인원 전담부서 인원	
	사업총괄 책임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담당자	성명		소속(직위)		
	연락처	(전화)	(이메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사업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1○년 ○월 ○일
 신고인 ○ ○ ○ (직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② 사업운영계획

1. 사업추진 경위

- 의료 해외진출 추진배경, 진출목적 및 의의 등

2. 사업개요

가. 일반현황

- 진출 의료기관 현황 (진출 의료기관 현황 및 해외진출 사업수행 역량)
- 진출국(지역)* 및 사업** 현황
 - *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일반현황, 사업여건(시장현황, 관련 제도 등) 등
 - **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형태, 규모, 내용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

나. 사업추진 현황 및 계획

- 사업추진 현황 (현재까지의 주요 추진경과 및 내용, 애로사항 등 작성)
 - * 컨소시엄 구성 시 참여기관별 역할, 현지 파트너 보유 시 파트너 소개(기업 현황 및 신용도 등)
- 사업추진 계획 (진출전략 및 추진 단계별 수행계획, 연도별 시설·장비 및 인력 운영계획, 투자 및 자금조달 계획 등 작성)

3. 사업성 검토

- 시장성* 및 기술성** 분석
 - * 시장의 특성, 수요-공급 분석, 위험요인 분석, 예상 시장점유율 전망 등
 - ** 사업의 특성 분석, 제공 원가 및 제공 과정, 소요인력 등
- 경제성 분석 (연도별 투자비 및 수입 추정, 투자 순수익 및 수익률 등)

4. 중장기 계획

- 중장기 사업 운영계획 및 사업 확대 전략 (확대 목표를 정량, 정성적으로 기재)

5. 기대효과

<의료법 제3조>

제3조(의료기관)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p>법률</p>	<p>제4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을 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정관에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 절차, 시기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증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하려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 제33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2. 의료 해외진출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을 증명하는 자료 사본.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 법인을 설립·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설립·인수를 증명하는 자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서 사본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사업운영계획서 4. 의료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p>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인가·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다만, 국외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 위하여 국외법인을 설립·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수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 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해당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일부부터 45일 이내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에 흠결이 있거나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10일(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의료 해외진출의 사업운영계획이 변경되거나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계약체결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고절차, 신고방법, 및 신고내용의 변경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규칙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①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신고확인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 의료해외진출 신고서: 별지 제 1호 서식
2. 의료해외진출 신고확인증: 별지 제 2호 서식

2. 신고 의료기관 금융·세제 지원

① 既 구성된 의료 해외진출 정책펀드를 활용한 지원

○ 한국의료 글로벌 진출 펀드(500억원, '15.4 조성)

- 해외진출 의료기관, 의료기기 수출기업 등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 투자 추진 중
- * 운용사 : KTB 프라이빗 에쿼티, 뉴레이크 얼라이언스 매니지먼트

○ 글로벌 헬스케어 펀드(1,500억원, '16.1 조성)

- 해외진출 의료기관, 바이오 제약 등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대를 위해 투자 추진 중
- * 운용사 : KB인베스트먼트, 솔리더스인베스트먼트

② 정책금융기관 금융활용

○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정책금융기관별 정책금융상품

기관	구분	상품
한국수출입은행	대출	해외투자자금대출, 해외사업자금대출, 현지법인 사업자금대출
	보증	해외사업관련 채무보증, 해외사업이행성보증
	투자	지분증권
KDB산업은행	대출	해외직접투자자금대출, 역외대출, 현지금융
	투자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주식 및 주식관련채), 파이오니어 프로그램(벤처금융)
한국무역보험공사	보험	단기수출보험, 서비스종합보험(기성고·연불방식), 중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신용보증기금	보증	시설자금 보증, 예비창업자 보증,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보증, 퍼스트펍권기업 보증, 고용창출기업 보증, 고부가가치 창출 유망서비스기업에 대한 보증, Best-Value 서비스 기업 보증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비은행대출보증, 회사채보증, 담보어음보증, 이행보증, 사채인수보증, 상거래담보보증, 유동화회사보증, 전자상거래대출보증

* 각 정책금융기관은 의료기관들이 제출한 사업내용 및 지원자금(대출·보증) 대상 기관의 신용등급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지원가능여부, 세부조건 등 결정

1 지원에 대한 충족 요건

-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영 제7조 제2항)
 -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2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음(영 제7조 제3항)

3 통지 의무

-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함(영 제7조 제4항)

<p>법률</p>	<p>제17조(금융 및 세제 지원) ① 국가는 의료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게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자금공급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 대상 및 요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은 규모 및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p>
<p>시행령</p>	<p>제7조(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의 지원) ① 법 제4조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신고한 의료기관(이하 “해외진출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융 또는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금공급 2. 「한국산업은행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금공급 3. 「무역보험법」 제8조의3에 따른 보험료율이나 보험금 지급시기 등의 우대 4.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제6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한 지원 5. 「신용보증기금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상 우선적 신용보증 6.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신용보증 7.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 지원 ② 해외진출 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 해외진출의 내용 및 지역 등이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2. 의료 해외진출의 종류와 규모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의료기관의 재정여건 및 조직규모 등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4. 그 밖에 의료 해외진출의 성격이나 경위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활동 실적 등에 비추어 자금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 ③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외진출 의료기관이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요건 및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시행규칙</p>	<p>관련 조문 없음</p>

3.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기본 개념

○ 「외국인환자」의 개념(법 제2조 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외)환자(법 제2조 제2호)를 의미함

○ 「외국인환자」의 제외 범위 (규칙 제2조)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에 따른 기타(G-1)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 * (G-1비자 발급 대상자의 예)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 중인 자와 그 보호자,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자와 그 보호자, 각종 소송 수행중인 자,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중인 자, 난민신청자 등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유치행위」의 주체

-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유치 의료기관, 유치업자

○ 「유치행위」의 개념

- (법적 개념)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법 제2조 제3호)
- (통상적 의미) 유치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홍보, 해외 에이전시, 해외 의료기관 등을 통하여 외국인환자가 의료기관을 방문케 하는 행위, 유치업자의 경우 외국인환자의 진료 계약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행위를 의미

1 등록 요건

-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 제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제3조(전문의의 전문과목)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할 것(법 제6조 제1항 제2호)
 - (내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 (연간 배상한도액)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 : 1억원, 종합병원 : 2억원
-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연간 배상한도액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2 제출서류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 제1항 제3호)
 - 보험증서 사본 등
- 사업운영계획서(규칙 제5조 제1항 제4호)

위반 시 벌칙사항

- (시정명령)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 부과 가능(법 제22조)
- (등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강제조항)(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징금) 미등록 유치행위 시 과징금 부과(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법 제26조)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신고자 포상)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법 제27조)
- (벌칙) 미등록 유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제2호)
- (양벌규정) 벌칙규정 적용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법 제30조)

3 신규 등록절차

○ 아래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 교부

－ (신청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안내 및 작성

* [첨부 3-1-1] 등록신청서 서식 참조

－ (접수)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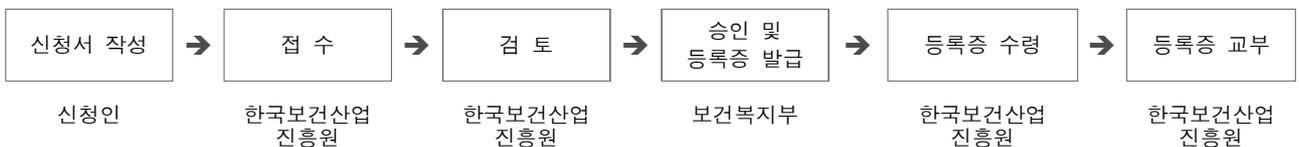
－ (승인 및 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

－ (등록증 교부)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안내자료 교부

* [첨부 3-1-2] 등록증 서식 참조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절차 >



4 등록 갱신절차

○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1항)

* [첨부 3-1-3]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참조

5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고지 의무 등

○ 등록증 게시 (법 제8조 제1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의무

○ 환자의 권리 게시 (법 제8조 제2항)

－ 「의료법」 제4조제 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할 의무

*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비치할 수 있음(선택사항)

* [첨부 3-1-4, 3-1-5] 외국인환자 권리와 의무 안내문 예시 (영어, 중국어) 참조

○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법 제8조 제2항)

－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 [첨부 3-1-6, 3-1-7] 외국인환자 치료계획서 서식 예시 (영어, 중국어) 참조

-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 [첨부 3-1-8, 3-1-9]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서식 예시 (영어, 중국어) 참조

-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 [첨부 3-1-10, 3-1-11]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해결절차 안내문 예시 (영어, 중국어) 참조

6 실적보고

○ (보고 기간) 매년 2월 말까지 (법 제11조)

○ (보고 대상)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 (보고 내용)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유의 사항

○ 유치실적 보고기간 1개월 단축

- (기존) 매년 3월 말까지 보고 → (변경) 매년 2월 말까지 보고 (법 제11조)

위반 시 벌칙사항

○ (시정명령) 실적보고규정(제11조)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 부과 가능(법 제22조)

○ (등록의 취소)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9호에 따라 등록 취소 가능(임의조항)

○ (벌칙) 시정명령 미이행시,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 (양벌규정) 위 벌칙규정 적용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법 제30조)

○ (과태료) 사업실적 허위 보고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31조)

7 실적보고 절차

○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 실시(규칙 제9조 제2항)

○ (1단계) 실적보고 온라인 페이지 접속 (medicalkorea.khidi.or.kr)



○ (2단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로그인

구분	현황
의류기관	2,834
유치업자	1,447
총	4,281

구분	현황
유치사업등록 의료기관	바로가기
유치사업등록 유치업자	바로가기
등록절차안내	메일받기

구분	현황
유치사업등록안내	
유치실적보고안내	

구분	현황
유치실적보고	
유치사업등록안내	
등록절차안내	메일발송
유치실적보고안내	
등록의료기관	브라가기

○ (3단계) 실적보고에서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무실적보고’ 중 택일

엑셀업로드

- 월별 상시보고 가능
- 월별 및 전체 월 입력 가능

직접입력

- 상시보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한 명씩 직접입력

무실적보고

- 실적보고 기간 내 무실적보고 가능

○ (4단계) 실적보고에서 ‘엑셀업로드’ 시, 실적보고 양식을 다운로드

실적보고 양식_신규버전.zip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공문)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조사 시행 안내
- 한국의료 대표 브랜드 선정
- 제5회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
- 2014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 대상 행정처분(등록취소) 예정 공지
-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 안내(상위 의료기관 100개소, 유치업체 30개소)

○ (5단계) 다운로드 받은 실적보고 양식에 따라 기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1	환자등록번호	출생연도	성별	국적명	유치경로	유치업자코드	진료일자	진료과명	진료비	지불수단	계약유형	진료유형	입원일자	퇴원일자	주진단
2	최대13자리	숫자4자리	남/여	한글	직접유치/국내계약/해외계약	A9999(A+숫자4자리)	yyyy-mm-dd	한글	숫자만	직접지불/계약지불	미군/글로벌보험/기타계약	입원/외래/건강검진	yyyy-mm-dd	yyyy-mm-dd	상병코드
3				목록참조				목록참조							목록참조
4	(예시)														
5	1234567890123	1999	남	러시아	해외계약		2015-01-09	정형외과	1000000	직접지불		입원	2015-01-09	2015-01-29	K123
6	P1234567	2000	여	중국	국내계약	AS432	2015-05-05	성형외과	500000	계약지불	글로벌보험	외래			C123
7	1234567890123	1999	남	러시아	해외계약		2015-03-30	정형외과	1000000	직접지불		외래			K123
8	4567ABC123	1994	여	일본	직접유치		2015-11-01	검진센터	1500000	직접지불		건강검진			
9	400000111	1960	남	미국	직접유치		2015-12-01	소화기내과	2800000	계약지불	미군	입원	2015-12-01	2015-12-31	R123
10															
11	* 각 열의 최대값은 11자리입니다. (숫자만 입력 가능) (실적보고 다운로드 시 2행부터 시작되어야 함)														

1

유치경로	유치경로가 '국내계약' 인 경우 유치업자코드번호 입력(기관코드목록 참조)
직접유치	의료기관의 마케팅에 의해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경우
국내계약	국내 유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경우
해외계약	해외 유치업자(여행사 등)으로부터 직접 소개받은 경우
지불수단	내용
직접지불	외국인환자가 직접 현금/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계약지불	글로벌보험사 및 미군 등 특정 단체에서 지불되는 경우
계약유형	지불수단이 '계약지불' 인 경우 입력
미군	미군 및 그의 가족으로 미군(트라이케어)에서 지불되는 경우
글로벌보험	외국인환자가 글로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진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는 경우
기타계약	그 외 특정 단체에서 지불되는 경우

○ (6단계) 기재한 실적보고를 업로드

1. 엑셀업로드 | 2. 월별 업로드: 월별 선택, 전체 월 업로드: ALL 선택 | 3. (정기)2015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4.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ALL | 5. 1. 찾아보기 : 해당 엑셀선택, 2. 엑셀로드 : 데이터 생성, 3. 검사 : 생성 데이터 오류검사 (오류시 색상으로 표시), 4. 데이터 오류 없을시 저장 버튼 생성, 5. 저장 클릭 후 확인

○ (7단계) 업로드한 실적보고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 후 종료

최종보고 구분 표시사항

1. 엑셀업로드 or 직접입력: 실적보고
2. 무실적보고 : 무실적보고

⑧ 달라지는 제도

- (등록 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 신설) 미등록 유치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법 제24조 제2항)
-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 (법 제7조)
 - 등록증 대여시, 등록 취소(제24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양벌규정(제30조)이 적용되니 유의할 것(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등록 유효기간 신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법 제6조 제4항)
 -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 갱신 필요(법 제6조 제5항)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의무 신설) 의무 가입 필요 (법 제6조 제1항 제2호)
- (기등록 기관 갱신 특례) 기등록기관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 필요(법 부칙 제2조)
- (실적보고기간) 매년 2월 말까지(법 제11조)

< 달라지는 제도 요약 >

등록요건	기존 제도	달라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등록 금지기간 ·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 등록증 유효기간 ·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실적보고기간 	<p style="text-align: center;">X</p> <p style="text-align: center;">X</p> <p style="text-align: center;">X (1회 등록으로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임의 가입</p> <p style="text-align: center;">매년 3월 말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 (1년간 재등록 금지)</p> <p style="text-align: center;">○</p> <p style="text-align: center;">○ (3년마다 갱신 필요)</p> <p style="text-align: center;">의무 가입</p> <p style="text-align: center;">매년 2월 말까지</p>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전 화 번 호	
	의료기관 주소	외 국 인 환 자 유 치 진 료 과 목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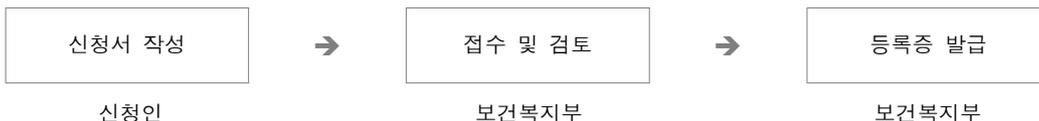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 1. 의료기관 명칭
- 2. 의료기관 주소
- 3. 대표자 성명
- 4. 대표자 생년월일
- 5. 외국인환자 유치 진료과목
- 6.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등록구분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명칭	연락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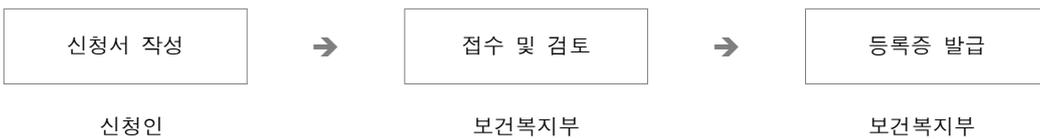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환자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가이드라인

Patient Guide for Patient's Rights and Responsibilities (영어)

Patient's Rights

Dignity and Respect

You will be given appropriate and professional healthcare regardless of your age, gender, race, religion, nationality, social status, or if you have any special needs. You will be treated with compassion, dignity and respect. Your legal guardian or any legally authorized person will exercise your rights according to the extent of the law should you be unable to do so.

You have the right to meet and talk with family, friends and other visitors during visiting hours unless such rights are restricted as part of your overall medical treatment. You also have the right to refuse visitors.

Your special needs will be respected, whether these mean requiring language translators, special religious food requirements, device or access assistance, during the course of your care.

During your stay in our hospital, you may arrange for your own spiritual care, and request for any counselling or pastoral support to be made available.

Our Hospitals will respect and comply with your decisions made in accordance to your Advance Medical Directive*.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to donate tissue or participate in any sort of medical research whilst admitted to our Hospitals.

**The Advance Medical Directive (AMD) is a legal document you sign in advance to inform your doctor that you do not want the use of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to be used to prolong your life in the event you become terminally ill and unconscious and where death is imminent.*

Confidentiality and Privacy

Your medical information and all aspects of care rendered to you are kept private and confidential. Your medical records are accessed only by those involved in treating you and arranging for your care. These records will not be released to anyone without your consent, except when required by the law or a third-party payer contract.

You may request for a copy of your medical report in accordance to the hospital's policy.

Your medical records are kept in a safe and protected environment.

Receive Information and Explanation about Your Treatment

You are entitled to information about your medical condition, treatment and possible results in a language that you understand (where possible). This includes information about possible risks, side effects and alternative methods of treatment.

You have the right to know the names of the healthcare professionals responsible for your treatment and care.

The information provided will help you to participate in decisions involving your medical condition and potential treatment.

At any time, you will have access to people and information about health education, self-care and prevention of illness.

You have the right to refuse medical care or recommended treatmen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However, if you choose not to undergo treatment, or leave the hospital against the doctor's advice, you will have to accept responsibility for any medical consequences resulting from your decision. You will be briefed on the possible medical consequences.

Financial Counselling and Estimated Bill

You are entitled to financial counselling and an estimate of your hospital bill at the time of your admission. Be mindful to ask for information related to any change in your treatment plan or medical needs which may alter this initial estimate.

You have the right to ask for this information and seek the necessary clarification whilst admitted to our Hospital.

Upon Your Discharge

Feel free to ask for your healthcare instructions in writing; we want you to feel that you have the information you need to care for yourself at home. Please make sure you and your care-giver understand these instructions and ask questions until you understand them.

Your medication must be followed as prescribed, and if you have any concerns about your safety, please tell your nurse, doctor or therapist.

Make sure you have the na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your doctors, clinics, pharmacies and rehabilitation services for easy reference.

Patient's Responsibility

Provision of Information

You are required to provide accurate and complete information about your present medical condition and any infectious conditions you may have, including past illnesses, hospitalizations, medications, Advance Medical Directive (AMD), and other relevant details in order for you to receive appropriate and safe medical treatment.

Please inform us if you have any existing infectious conditions so that appropriate infection control procedures can be taken. Your long term health depends on your responsibility in recognizing the effect of your lifestyle on your personal health.

Advise us of any changes in your health status.

When obtaining copies of your own medical reports, please ensure you have received the correct information before you leave.

Respect and Consideration

We ask that you and your family members be considerate of other patients in the hospital who also require rest and the attention of our staff; please consider the rights of others, and show respect and courtesy to all staff, doctors and nurses, and visitors.

You are responsible for your own conduct and behaviour during your stay in hospital; any threat, harassment, or intention to cause others harm or disrupt the hospital operations are not acceptable actions.

Please comply with hospital regulations put in place for patients' safety (for example, our policy on visitation).

Please respect the hospitals' equipment and facilities, treat such property with reasonable care, and be conscious in helping us reduce any wastage in precious resources such as water usage, etc.

No Smoking Policy

Our Hospital is no smoking zone. Please observe the "No Smoking" policy.

Admission

Please do not bring any valuables with you, as you are responsible for the safekeeping of your personal possessions.

Please arrive for admission at the appointed time so as to ensure that the necessary pre-surgical preparations can be completed in a safe and controlled manner.

You will be advised of your financial commitment related to your treatment by your consulting physicians as well as surgical and hospital charg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pay your bills or make suitable arrangement to fulfil your financial obligations. By remitting your bill duly and on time, you will help the hospital continue to focus on its work to serve other patients' needs.

Medication and Treatment

All your medications will be supplied by our Hospital Pharmacy and administered by our staff whilst you are in our Hospitals.

Do not tamper with any Medical Devices.

Please do not bring any medication from home unless you need to show it to your Doctor. You should however, bring along a written list of medications you may be on and show this list to your Doctor and the nurses in the ward. Any medication that you bring from home will not be administered and will be returned to you for safekeeping.

患者权利和责任指南书 (중국어)

患者的权利

尊严和尊重

不考虑您的年龄，性别，人种，宗教，国籍，社会地位甚至特殊需求，您将会接受合适且专业的医疗保健。您也会被给与同情，尊严和尊重。您的法定监护人或者任何合法授权人在您本人不能行使权利的时候，将依据法规在法律范围内行使您的权利。

在不妨碍您接受治疗的情况下，您在患者探访时段有权与家人，朋友以及其它的访问者见面以及交谈。当然您也有权拒绝探访。

在监护过程中，您的特殊需求也将会被尊重，例如需要语言翻译、特殊的宗教饮食、设备以及访问援助。

在住院期间，您也可以安排自我精神修养，并且可以提出商谈或者宗教帮助的要求。

我医院将尊重和遵守您的AMD执行。您有权拒绝捐赠身体器官，您也有权拒绝医院任何有医疗研究性质的治疗。

** AMD 是您事先签订的具有法律意义的文件。此文件是为了通知医生如果您有不能治愈的病症，或者失去意识，或者即将面临死亡的情况下，拒绝接受为了维持生命治疗的内容。*

机密和隐私保障

患者的医疗记录以及接受治疗的所有事项将会交给患者自己保管。患者的医疗记录只有与负责患者治疗人员才能接触。医疗记录只给法律允许的人或者指定的第三者了解，如没有患者的允许将不会公开。

根据医院的政策将会要求副本，并且会对患者的医疗记录进行安全保管。

索求涉及与治疗有关的信息以及签名

患者有权用自己能理解的语言提供患者自身的健康状态，治疗以及结果（在可能的情况）。这些资料包括可能的风险，副作用和治疗方法。

患者有权知道医护人员为您进行的治疗和护理的专业名称。

所提供的信息将会帮助患者根据自己的身体状态来判断选择治疗方案。

在任何时候患者可以接触他人并且告知他人与健康教育，自我护理和预防疾病的相关信息。

患者有权在法律允许的范围内拒绝医疗护理或推荐的治疗。然而，如果患者选择了不遵循治疗，或者在没有医生建议的情况下擅自离开医院，患者将接受可能产生的任何后果。

财务咨询及预计条例草案

患者有权在入院时估算自己的医院帐单。当要实行与最初预想治疗经费有出入的治疗计划以及变更时，必须要同患者进行商议。

在住院期间，患者有权咨询相关信息并且要求医院做出解释。

出院相关事项

患者随时要求自己的医疗保健治疗的书面文件。我们希望患者能明白您能按照我们所建议的信息以便在家进行自我疗养。请确定患者和患者的看护明白这些说明并且尽量提出问题直到最终理解。

患者的药物必须按照医疗处方，如果有任何疑问，请务必咨询看护或者治疗医师。

患者最好确认拥有医生，医院，药店和康复服务的联系方式以供参考。

患者的责任

提供医疗记录

为了患者能接受正确且安全的治疗，请提供包括病例，入院，药物，AMD以及其它有关现阶段健康状况的详细事项报告。

请告知现在是否感染，将采取适当的感染隔离措施。患者应该认识到生活方式对个人的健康有相当大影响。

健康状况如果有变化请通知医院。

当患者拿到自己的医疗记录的复印件时，请确定内容是否属实。

尊重和关怀

希望患者和患者的家族成员能充分考虑到我们医院也有其他的患者，请尊重他们需要静养的权利。并且希望尊重我们医院职员，医生，护士以及探病者。

在医院的期间，患者要为自己的品格和行动负责，不允许有任何威胁，骚扰，或者意图造成他人损害或破坏医院运行的行动。

请遵守逐一落实为了病人安全而实行的规章制度（例如：我们医院的探访政策）。

请遵守医院的设备和设施，合理且谨慎的对待这些医院财产。请增强诸如节约用水等宝贵资源的意识等。

禁烟政策

我们医院是禁烟区域，请遵守禁烟政策。

入院

请不要携带贵重物品，请自行保管好个人物品。

请在指定时间到达医院，以确保在安全且可控制的情况下做好必要手术前的准备工作。

患者将会被告知根据患者的主治医生所估算的手术和医院费用。

患者有责任对自己在医院的费用进行支付或者做适当的安排。患者的及时汇款支付，这将帮助我们医院继续服务其他患者的需求。

药物和治疗

患者在我们医院期间，我们医院药房和医院的工作人员将会提供患者所有的药物。

不要乱动任何医疗器械。

请患者不要从家里携带任何药物，除非患者必须要展示给医生看。患者应该要列一个正在服用的药物清单，并且在病房把此清单展示给医生和护士看。任何患者从家里携带的药物将不会被保管，将会退还给患者自己保管。

TREATMENT PLAN

Date :	Coordinator :
Patient name :	
Date of birth :	
Gender	Male / Female
Case reviewer	Dr. Dept.
Patient's diagnosis :	
Length of hospital stay :	
Name of surgery/ procedure :	
Others (Medications, Complications, Side effects, etc.)	

治疗计划

日期:	Coordinator :
患者姓名 :	
出生日期 :	
性别	男 / 女
主治医生	医生 专科.
患者诊断 :	
入院日数 :	
手术名称 :	
其他 (药品、并发症、 副作用等)	

Treatment Agreement

Patient Name:		Hospital Number:	
Name of Attending Physician:		Date of Admission:	Time:
Nationality:	Gender: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F	Date of Birth: mm/dd/yyyy	
Country of Passport:	Passport Number:	Passport Expiration Date: mm/dd/yyyy	
Patient Home Address:		Phone number:	
		E-mail address:	
Emergency Contact	Name:	Phone number:	
	Address:		
Type of Insurance: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is document or do not understand any portion of it, or need an interpreter, ask your physician or other health provider.

Terms of Agreement

1. Patient agrees to abide by all the hospital rules and regulations, as well as all directives issued by any hospital representatives. Once the doctor, after his/her judgement, issues a discharge of any kind for the patient, the patient must follow the doctor's instruction.
2. Patient/guarantor must pay the full medical expenses to hospital by the deadline agreed upon. If the patient does not pay the full medical expenses, the hospital will retain all contents within the deposit the patient/guarantor has made during hospitalization and will pursue legal actions against the patient/guarantor in a court within Korean jurisdiction.
3. If the patient is not covered by Korean medical insurance plans, he/she must either have a Korean guarantor with the financial resources to sponsor the patient, or deposit (\$) or more as determined by the hospital which can be applied to the total cost of the medical treatment. However, any amount beyond the deposit must be paid within the payment due date enlisted by the hospital by the patient or a guarantor in collective responsibility.
4. General medical fees (medical conduct, medical supplies, medical materials, medical equipment, etc) which are exempt from the payment of health insurance will be paid by the patient and guarantor in collective responsibility.
5. Patient agrees to accept liability for any loss or damages caused directly/indirectly by the patient to the hospital and/or its staff and/or its equipments/furniture, thereby accepting the financial responsibility to replace or correct such loss or damage(s) before being discharged from the hospital.
6. The hospital does not have responsibility for the patients/guests of patient's/patient guardian 's personal property/valuables/money that is lost/misplaced/damaged/stolen during the patient's stay at the hospital.
7. In case of staying in other than regular room, the patient assumes the special food provided by the hospital and extra cost for the food and the room.
8. For any problems occurred during or after patient's hospitalization/operation/procedures/treatment/care, the patient will not pose any legal action against the hospital with the exception of medical errors by the hospital(In case of conflict, the arbitration may be registered to Medical Judgement Arbitration Committee under the provision Article 54, Item 2 of Korean Medical law.). Any and all disputed and court actions will be only under Korean jurisdiction.

I have read and understand the above statements

_____ X _____
 (Date) (Time) (Signature of Patient or authorized individual) (Relationship to patient or authorized individual)

- _____ The patient/authorized individual has read this form or had it read to him or her.
- _____ The patient/authorized individual states that he or she understand this information.
- _____ The patient/authorized individual has no further questions.

(Date)

(Time)

(Signature of witness)

Payment Guarantor			
Name:		Relationship to patient:	
Nationality:	Gender: <input type="checkbox"/> M <input type="checkbox"/> F	Date of Birth: mm/dd/yyyy	
Country of Passport:	Passport Number:	Passport Expiration Date: mm/dd/yyyy	
Address	Home Country:		
	Current Residential Place (in Korea):		
Phone number:		E-mail address:	

I accept all of the obligation listed above if the patient cannot pay all hospital bills on time for any reason. I have read, understand, and agree to the above statements.

(Date)

(Time)

X

(Signature of Guarantor)

INVOICE

CUSTOMER :

INVOICE DESCRIPTION

Invoice No. :
Reference :
Issue Date :

Customized medical treatment to name of hospital

No.	Description	Total
1		KRW
2		
3		
4		

Total invoice amount

KRW

(approx.

USD)

<p><u>PAYMENT INSTRUCTION WIRE INFORMATION</u> BANK : name of bank ADDRESS : HOLDER NAME : name of hospital Account# : Swift code :</p>

Estimated Cost

- Medical charge (including doctor`s fee, tests fee, operation/ anesthesia charge, medication/ injection fee, medical supplies and etc.)	\$ (USD) _____(approx.)
- Room charge	\$ (USD) _____ (approx.)
- Meal charge	\$ (USD) _____ (approx.)
- Interpreting service	\$ (USD) _____ (approx.)
- One caregiver (staying with patient for 24hrs)	\$ (USD) _____ (approx.)
- Others ()	\$ (USD) _____ (approx.)
Total	\$ (USD) _____ (approx.)

Please note that the costs given above are only rough estimations and the information applies to standard cases only.

If the patient's progressing condition requires further tests, this may alter the estimated costs. Complication may also increase the cost of treatment and length of hospital stay.

Hospital room charges are as follows;			
Semi-private room :	KRW	~ KRW	per night
Standard single room :	KRW	~ KRW	per night
Deluxe suite :	KRW	~ KRW	per night
Meals :	KRW	per	meal

Should you have any questions or concerns, please do not hesitate to let us know.

Best regards,

INTERNATIONAL HEALTH SERVICES

AA MEDICAL CENTER

TEL: 82-2

FAX: 82-2-

EMAIL:

WEBSITE :

治疗协议

患者姓名：		住院号：	
主治医生姓名：		入院日期：	时间：
国籍：	性别： <input type="checkbox"/> 男 <input type="checkbox"/> 女	出生年月：mm/dd/yyyy	
国家护照：	护照号码：	护照到期日期：mm/dd/yyyy	
患者家庭住址：		电话号码：	
		邮箱地址：	
紧急联络处	姓名：	电话号码：	
	地址：		
保险种类：			

如果您对本文有疑问或者某些部分不明白，或需要一名翻译，请向您的医生或其他保健提供者。

协议条款

1. 患者同意遵守所有的医院规章制度，以及由任何一家医院的代表发出的所有指令。一旦医生在他/她的判断后，发出让患者出院的指示，患者必须听从医生的指示。
2. 患者/保证人与医院达成一致，在医疗费用缴纳的最后期限前必须全额支付住院医疗费。如果患者不支付全部医疗费用，医院将在住院期间保留有患者/保证人存款的所有内容，并将继续对患者/保证人在法庭管辖范围内进行韩国法律追究。
3. 如果患者不被韩国医疗保险计划所包括，他/她必须具有与韩国担保人的资金赞助或押金（美元），或有被医院鉴定为能够支付医疗总费用的东西。但是任何超出存款金额必须在医院制订的付款到期支付日期由患者或有集体责任的保证人来支付。
4. 总医疗费用（医疗行为，医疗用品，医疗材料，医疗设备等）是由患者/有集体责任的保证人的医疗保险支付豁免。
5. 患者同意接受责任，由医院患者和/或它的工作人员和/或它的设备/家具直接引起的任何损失或损伤。从而在出院前接收经济责任以取代这些损失或损伤。
6. 在患者住院停留期间，该医院对患者/患者的访客/患者的保证人的个人财产/贵重物品/金钱丢失/错误/损坏/被盗不负责任。
7. 鉴于在不同于普通病房的情况，患者承担医院提供的特殊食品和病房的额外费用。
8. 在患者住院/手术/程序/治疗/护理期间或者之后，患者将不会对任何由医院的医疗差错而对医院采取法律行动（在冲突情况下，仲裁可以按照规定登记的医学判断仲裁委员会第 54 项，韩国医疗法第 2 ），任何和所有有争议的法院诉讼将只在韩国管辖。

我已阅读并了解上述声明

_____ X _____
 (日期) (时间) (患者授权个人的签字) (授权个人和患者的关系)

_____ 患者/授权人已经阅读了这份表格或者已经阅读给患者听。

_____ 患者/授权人表明已经理解了这份表格信息。

_____ 患者/授权人没有任何疑问。

_____ _____
 (日期) (时间) (见证人签字)

担保人			
姓名：		和患者的关系：	
国籍：	性别: <input type="checkbox"/> 男 <input type="checkbox"/> 女	出生年月： mm/dd/yyyy	
国家护照：	护照号码：	护照到期日期： mm/dd/yyyy	
地址	母国：		
	目前居住地（韩国）：		
电话号码：		邮件地址：	

我接受上述所列的所有义务，如果患者不能及时支付医疗费用或者其它的原因。我已阅读并了解上述声明。。

_____ X _____
 (日期) (时间) (担保人签字)

报价单

客户： _____

报价单 内容

报价编号：
参考号：
报价日期：

(医院名) 患者治疗内容

序号	内容	价格
1		KRW
2		
3		
4		

合计

KRW

(约

CNY)

结账银行信息

银行：银行名
地址：
账户名： 医院名
账号：
银行国际代码：

预计价格

- 医疗费 (含医生诊断、检查、手术、麻醉、药品、注射、医药用品等费用)	元 (RMB) _____ (约)
- 病房费	元 (RMB) _____ (约)
- 餐饮费	元 (RMB) _____ (约)
- 翻译服务	元 (RMB) _____ (约)
- 个人看护人 (24小时看护病人)	元 (RMB) _____ (约)
- 其他 ()	元 (RMB) _____ (约)
合计	元 (RMB) _____ (约)
以上的价格是大概预测一般情况而计算的。如患者病状需追加检查，费用还会有所变化。并发症还会增加治疗费用以及入院日数。	

病房费按照以下等级收费;			
双人间 :	KRW	~ KRW	一天
单人间 :	KRW	~ KRW	一天
豪华套间 :	KRW	~ KRW	一天
餐饮费:	KRW	一顿	

如果有任何问题或疑问，你可以随时联系我们。

国际健康服务

AA 医疗中心

TEL: 82-2

FAX: 8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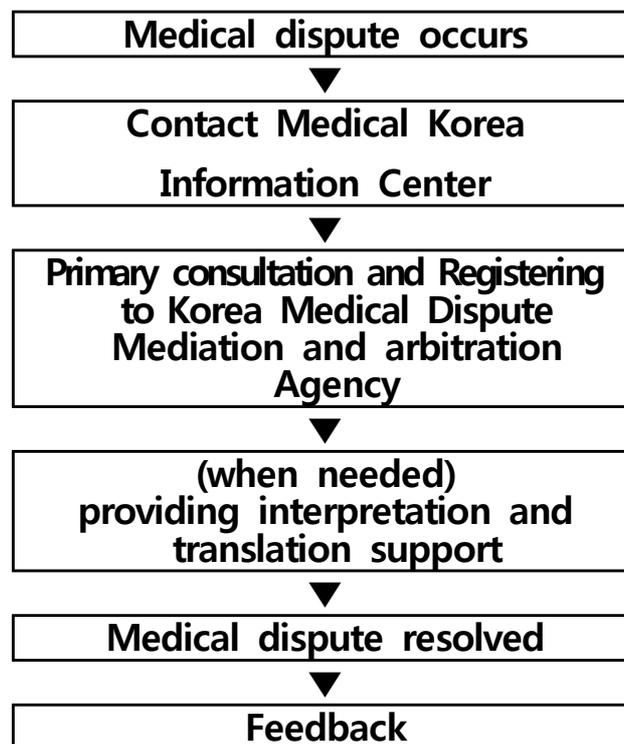
邮箱:

网页 :

Medical dispute mediation & arbitration for foreign patients

Medical Korea Information center provides support in cooperation with Korea Medical Dispute Mediation and arbitration Agency and Korea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Health and Welfare, in case of medical complaints and malprac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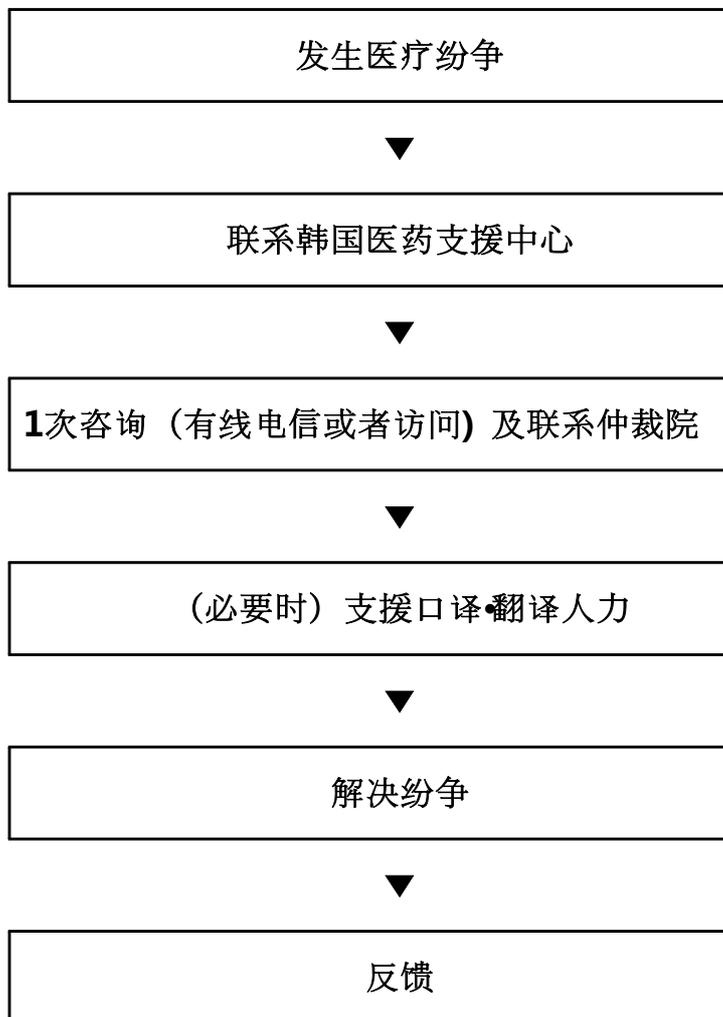
- Services
 - Providing consultation, supporting medical translation, and registering a case to the arbitration agency



海外患者医疗纷争调停·仲裁

在韩国接受治疗的海外患者发生医疗事故等纷争时，韩国医疗支援中心与韩国医疗纷争调停仲裁院，韩国保健福利人力开发院及地方自治团体协力给予支援帮助。

- 支援内容
- 咨询，医疗翻译支援，联系仲裁院等



1 등록 요건

○ 보증보험 가입(법 제6조 제2항 제1호)

* (보증보험 요건)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규칙 제4조 제2항)

○ 1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법 제6조 제2항 제2호, 규칙 제4조 제2항 제3호)

* 단,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 자본금 요건의 예외로 함

○ 국내 사무소 설치(법 제6조 제2항 제3호)

2 제출서류

○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 제2항 제1호)

○ 자본금을 보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규칙 제5조 제2항 제3호)

○ 정관(법인만 해당)(규칙 제5조 제2항 제4호)

○ 사업운영계획서(규칙 제5조 제2항 제5호)

위반 시 벌칙사항

○ (시정명령)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 부과 가능(법 제22조)

○ (등록의 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록 취소(강제조항)(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과징금) 미등록 유치행위 시 과징금 부과(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법 제26조)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신고자 포상)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 지급(법 제27조)

○ (벌칙) 미등록 유치행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8조)

○ (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제2호)

○ (양벌규정) 벌칙규정 적용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법 제30조)

③ 신규 등록절차

○ 아래의 절차를 거쳐 등록증 교부

－ (신청서 작성) 외국인환자유치사업에 대한 안내 및 작성

* [첨부 3-2-1] 등록신청서 서식 참조

－ (접수) 신청인은 등록요건을 확인 후 구비서류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

－ (검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신청인의 서류를 접수 및 검토 후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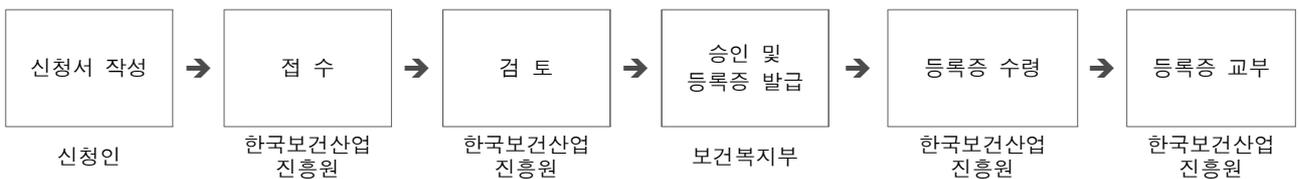
－ (승인 및 등록증 발급) 보건복지부의 최종 승인 후, 등록증 발급

－ (등록증 수령)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발급된 등록증을 수령

－ (등록증 교부) 신청인에게 등록증 및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안내자료 교부

* [첨부 3-2-2] 등록증 서식 참조

<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절차 >



④ 등록 갱신절차

○ 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규칙 제6조 제1항)

* [첨부 3-2-3] 등록 갱신 신청서 서식 참조

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위한 사전 고지 의무 등

○ 등록증 게시 (법 제8조 제1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 의무

○ 외국인환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할 사항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7조 제1항)

－ 제공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6 실적보고

- (보고 기간) 매년 2월 말까지(법 제11조)
 - (보고 대상)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법 제9조)
 - (보고 내용)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진료비, 수수료(법 제9조)
- * 법 제9조에 따라 과도한 수수료의 수수료가 제한되므로 수수료를 실적 보고 사항으로 추가

위반 시 벌칙사항

- (시정명령) 실적보고규정(제11조)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정명령 부과 가능(법 제22조 제5호)
- (등록의 취소) 실적보고 미이행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등록 취소 가능(임의조항)
- (벌칙)시정명령 미이행시,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위 벌칙규정 적용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법 제30조)
- (과태료) 사업실적 허위 보고서, 법 제31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7 실적보고 절차

○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적보고 실시(규칙 제9조 제2항)

○ (1단계) 실적보고 온라인 페이지 접속 (medicalkorea.khidi.or.kr)



○ (2단계) 외국인환자 유치정보시스템 로그인

등록기관현황
 기준일자 | 2016년 01월 25일

의료기관	2,834
유치업자	1,447
총	4,281

유치사업등록안내
 유차사업등록안내
 유치실적보고안내

유치사업등록 의료기관 바로가기
 유치사업등록 유치업자 바로가기
 등록절차안내 메일받기

정부 3.0
 [건강·문화·소통·협력]

Quick Menu

- 유치기관 등록신청
- 유치실적 보고
- 유치사업 등록안내
- 등록절차안내 메일발송
- 유치실적 보고안내
- 등록의료기관 보러가기

관련뉴스

행사	공고	기타
서울 명동역 외국인 환자 맞춤형 상담 향구 생겼다	2016-01-22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93
간호원, 외국인환자 종합 지원 서비스 가동	2016-01-0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92
국제의료법, 박 대통령 보고 후 479일만에 국회 통과	2015-12-07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91
인천시, 외국인환자안심보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2015-11-30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90
외국인 관광객, 내년 4월부터 성형수술시 '부가세 환급' 150억 규모	2015-11-24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89
지자체 의료관광객 유치권 '사찰'	2015-11-19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88
보건관광청, 12월 부산서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 설명회'	2015-11-10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Vol.187

○ (3단계) 실적보고에서 ‘엑셀업로드, 직접입력, 무실적보고’ 중 택일

업치실적보고 | 등록정보변경 | 알림마당 | 정보자료실 | 참여마당 | 유치사업소개 | FAQ | 메디존

· 엑셀업로드 | · 직접입력 | · 무실적보고 | · 실적보고현황 | · 실적조회 |

업치실적보고

- 월별 상시보고 가능
- 월별 및 전체 월 입력 가능

직접입력

- 상시보고 가능
- 홈페이지에서 한 명씩 직접입력

무실적보고

- 실적보고 기간 내 무실적보고 가능

○ (4단계) 실적보고에서 ‘엑셀업로드’ 시, 실적보고 양식을 다운로드

업치실적보고 | 등록정보변경 | 알림마당 | 정보자료실 | 참여마당 | 유치사업소개 | FAQ | 메디존

· 엑셀업로드 | · 직접입력 | · 무실적보고 | · 실적보고현황 | · 실적조회 |

공고

실적보고 양식_신규버전.zip

관련자료

클릭

○ (5단계) 다운로드 받은 실적보고 양식에 따라 기재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환자등록번호	출생연도	성별	국적명	유치경로	유치업자코드	진료일자	진료과명	진료비	지불수단	계약유형	진료유형	입원일자	퇴원일자	주진단
최대13자리	숫자4자리	남/여	한글	직접유치/국내계약/해외계약	A9999(A+숫자4자리)	yyyy-mm-dd	한글	숫자만	직접지불/계약지불	미군/글로벌보험/기타계약	입원/외래/건강검진	yyyy-mm-dd	yyyy-mm-dd	상병코드
			목록참조				목록참조							목록참조
(예시)														
1234567890123	1999	남	러시아	해외계약		2015-01-09	정형외과	1000000	직접지불		입원	2015-01-09	2015-01-29	K123
P1234567	2000	여	중국	국내계약	AS432	2015-05-05	성형외과	500000	계약지불	글로벌보험	외래			C123
1234567890123	1999	남	러시아	해외계약		2015-03-30	정형외과	1000000	직접지불		외래			K123
4567ABC123	1994	여	일본	직접유치		2015-11-01	검진센터	1500000	직접지불		건강검진			
400000111	1960	남	미국	직접유치		2015-12-01	소화기내과	2800000	계약지불	미군	입원	2015-12-01	2015-12-31	R123
* 각... 하신 후 2행부터 11행까지 삭제 후 업로드 (실적보고 자료가 2행부터 시작되어야 함)														

1

유치경로	유치경로가 '국내계약' 인 경우 유치업자코드번호 입력(기관코드목록 참조)
직접유치	의료기관의 마케팅에 의해 외국인환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온 경우
국내계약	국내 유치업자로부터 소개받은 경우
해외계약	해외 유치업자(여행사 등)으로부터 직접 소개받은 경우
지불수단	내용
직접지불	외국인환자가 직접 현금/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계약지불	글로벌보험사 및 미군 등 특정 단체에서 지불되는 경우
계약유형	지불수단이 '계약지불' 인 경우 입력
미군	미군 및 그의 가족으로 미군(트라이케어)에서 지불되는 경우
글로벌보험	외국인환자가 글로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진료비를 보험사가 지불하는 경우
기타계약	그 외 특정 단체에서 지불되는 경우

○ (6단계) 기재한 실적보고를 업로드

1. 찾아보기 : 해당 엑셀선택

2. 엑셀로드 : 데이터 생성

3. 검사 : 생성 데이터 오류검사 (오류시 색상으로 표시)

4. 데이터 오류 없을시
 저장 버튼 생성

5. 저장 클릭 후 확인

1. 월별 업로드: 월별 선택

2. 전체 월 업로드: ALL 선택

○ (7단계) 업로드한 실적보고에 오류가 없는지 검사 후 종료

최종보고 구분 표시사항

1. 엑셀업로드 or 직접입력: 실적보고
2. 무실적보고 : 무실적보고

8 달라지는 제도

- (등록 취소시 재등록 금지기간 신설) 미등록 유치행위 등으로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등록 신청을 할 수 없음(법 제24조 제2항)
-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신설)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 등록증 양도 또는 대여 금지(법 제7조)
 - 등록증 대여시, 등록 취소(제24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9조), 양벌규정(제30조)이 적용되니 유의할 것(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등록 유효기간 신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법 제6조 제4항)
 - 재등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 갱신 필요(법 제6조 제5항)
- (기등록 기관 갱신 특례) 기등록기관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등록 갱신 필요(부칙 제2조)
- (실적보고기간) 매년 2월 말까지(법 제11조)

< 달라지는 제도 요약 >

등록요건		기존 제도		달라진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등록 금지기간 · 등록증 대여 금지 의무 · 등록증 유효기간 · 실적보고기간 · 보증보험 증권 가입 · 자본금 1억원 이상 · 국내 사무소 설치 	⇒	X X X (1회 등록으로 가능) 매년 3월 말까지 ○ ○ ○	⇒	○ (1년간 재등록 금지) ○ ○ (3년마다 갱신 필요) 매년 2월 말까지 ○ ○ ○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 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명 칭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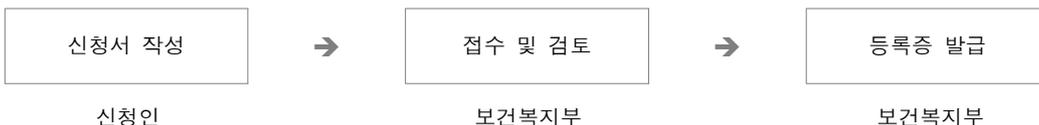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정관(법인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등록번호 제 호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 1. 명칭
- 2. 주소
- 3. 대표자 성명
- 4. 대표자 생년월일
- 5. 유효기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210mm×297mm[백상지(150g/㎡)]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등록구분	외국인환자 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명칭	연락처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의 갱신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수수료 없음
------	---	--------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및 검토



등록증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p>법률</p>	<p>제6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p> <p>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p>② 제1항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을 것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3. 국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을 것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3년으로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제5항에 따른 갱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제8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p> <p>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발급된 등록증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을 외국인환자가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환자의 권리 등을 외국어로 게시하고 의료기관 내에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도로 작성하여 안내하는 등 외국인환자가 해당 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의 진단명, 치료방법, 발생 가능한 부작용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 진료계약서 및 예상 진료비 3.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절차 <p>제11조 (보고의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 사업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시행령</p>	<p>제4조 (전문의를 배치하여야 하는 전문과목) 법 제6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과목을 말한다.</p>

시행규칙

제4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① 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이 가입하여야 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 공제조합(이하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내용으로 할 것
2. 연간 배상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일 것
 - 가.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조산원: 1억원
 - 나.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 다.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2억원
3.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유효기간 동안 계속 유지할 것

② 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증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보증보험을 말한다.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일 것
2. 「보험업법」 제4조 제1항 제2호 라목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의 보증보험일 것
3. 보험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③ 법 제6조 제2항 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자본금”이란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말한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일반여행업 등록을 한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제5조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2. 법 제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4조에 따른 진료과목별 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3. 법 제6조제1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등록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이 규칙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이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법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무실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운영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에 대하여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등록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2.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증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영어로 적은 문서를 의료기관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2. 분쟁발생 시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사항

3. 건강정보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영어로 적은 문서를 게시하고 출력물로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외국어로 되어 있는 문서를 추가적으로 게시·비치할 수 있다.

제9조 (사업실적 보고) ①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전년도 사업실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진료과목, 입원기간, 주상병명 및 외래 방문일수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외국인환자의 국적, 성별 및 출생연도

나. 외국인환자의 방문 의료기관, 진료과목, 입원기간 및 외래 방문일수

다. 외국인환자의 입국일 및 출국일

②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할 수 있다.

4.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1 개 관

- 한국 의료기관의 서비스 안전성 관리 및 유치사업기반 강화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갖추어야 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유치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성, 서비스 질 및 만족도 제고
 - 외국인환자들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시 선택을 돕기 위한 정보 제공
- 신청기관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평가·지정하므로 등록과 달리 의무사항이 아님
 - * [첨부 4-1] 유치기관 평가·지정신청서 서식 참조

2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평가를 통한 선별적 지정가능 (법 제14조 제1항)
-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제14조 제1항)
 -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국내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지정 취소 해당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유치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지정의 표시

- 지정받은 유치 기관은 지정 표시 사용 가능 (영 제6조 제1항)
 - * [첨부 4-2] 지정 유치기관의 표시 참조
- 지정 표시의 활용
 - 지정기관에 지정서 등을 교부
 - 지정기관은 지정 표시를 홈페이지 및 기관 홍보물 등에 활용 가능

3 유효 기간

- (지정의 유효기간)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법 제14조 제3항)
 - 단, 지정받은 유치기관 등록 취소 시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 효력 상실

- (재지정) 2년 단위로 재지정 가능 (법 제14조 제3항)
- 재지정을 받으려는 경우 지정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재지정 신청 필요

4 평가 기준 (영 제5조 제1항)

-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 그 밖에 업무평가에 필요한 사항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 그 밖에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 위 평가기준을 토대로 의료서비스(안전체계·진료체계·지원체계 등) 및 비의료서비스(환자권리·접근성·편의성·지속가능성·인적관리 등) 부문의 평가기준 마련 예정

5 평가·지정 방법(안)

- (조사·평가방법) 조사위원은 의료기관 규모별 2~4명으로 구성하고, 의료 및 비의료 서비스 부문을 각각 평가하여 결과 도출
 - (조사위원 규모) 의료기관별 2~4명 구성(병원 이상 3~4명, 의원 2명)
 - (평가 방법) 의료서비스와 비의료서비스 두 영역 모두 통과한 의료기관에 한해 지정, 기존 의료기관 인증 및 JCI인증 획득기관은 의료서비스 부문 평가 면제
- (평가 비용)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평가인력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정하여 평가대상기관이 부담
- (평가·심의 지정위원회)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관련 협회 등 10인 이내로 구성
- (평가 기간) 상시 신청·접수, 평가 및 지정 수행
- (인센티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Medical Korea 다국어 홈페이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한국관광공사의 의료관광 플랫폼 등에 지정 기관을 상시 게재

6 향후 계획

- 평가·지정 시범평가 실시(6.30~7.14, 9개 기관 대상 진행 중)
- 평가계획 마련 및 대상기관 교육·홍보 (7월~8월)
- 평가·지정제도 시행 (9월)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의료기관 명칭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의료기관 주소		
담당자	성명	부서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의 유치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2.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에 관한 증명자료 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4.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에 관한 증명자료 5.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에 관한 증명자료 6.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대한 증명자료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첨부 4-2

지정 유치기관의 표시

■ 지정 유치기관의 표시[시행령 제6조제1항 관련]

1. 표시도형



2. 제도법



[비 고]

1. 지정표시는 이미지의 변질이나 왜곡이 없도록 정확하게 재생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지정표시를 재생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사진제판 방식, 투사복제 방식 또는 컴퓨터를 이용한 원고 출력방식에 따라야 하며,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리드 스케일 비례규정에 맞게 재생하여야 한다.
3. 지정표시의 색상은 지정된 전용색상을 기본으로 하되, 적용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
4. 그 밖에 지정표시의 재생·사용·크기·색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p>법률</p>	<p>제14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고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진료과목,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국내 의료서비스 발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이 조에서 “유치기관”이라 한다)를 평가하고 그 결과 일정 수준을 충족한 유치기관을 선별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p> <p>③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하고, 2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다.</p> <p>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내 또는 국외에서의 홍보 2.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고용 기반 조성 3.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p>⑤ 제1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 제3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5조(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유치기관이 제24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p>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에 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5조(유치기관 지정을 위한 평가)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의료기관(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등록한 자(이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기 위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나.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홍보 및 활동 실적 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라. 진료과목의 유형 및 전문의의 보유 수준 마. 국내의료서비스에의 기여 정도 바. 그 밖에 외국인환자의 유치 및 진료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p>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p> <p>가. 제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p> <p>나.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와 관련된 분쟁 현황 등 그 업무평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p> <p>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및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이하 “유치기관”이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 및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기준에 관한 증명자료(전자문서로 된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기관의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에 드는 실비(實費)를 수수료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유치기관의 평가·지정 신청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평가결과 및 지정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 및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p> <p>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유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기준의 세부사항, 평가방법, 평가절차, 결과통보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3조(지정 취소의 절차)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 유치기관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p>
<p>시행규칙</p>	<p>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별지 제8호서식 2.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별지 제9호서식 <p>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등록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5.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전문인력 양성

1 개 관

-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의료진출 및 환자유치를 위한 인적 지원체계 구축(법 제13조 제1항)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교육 제공 및 검증된 전문인력 배출을 통한 인적자원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의료통역능력 검정 실시('16년 10월 시험예정)(법 제13조 제2항, 규칙 제11조)
 -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통역 제공인력 양성기관('16년 7월 기관지정 예정)
 - (시험공고) 시험일시, 시험장소, 접수방법, 응시수수료 등 시행계획을 시험시행일 60일 전까지 양성기관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종류) 필기시험과 구술시험(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구술시험 응시 가능)
 - (평가항목) 필기시험 : 국제문화, 의료서비스, 병원시스템, 기초의학
구술시험 : 외국어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의료지식
 - (합격기준) 필기시험 : 각 과목 총점의 40%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 이상 득점
구술시험 : 총점의 75% 이상 득점
 - (검정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 (결과발표)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을 모두 합격한 자에게 최종 시험 인증서 배부

참고 사항

- 필기시험에 합격한 시점으로부터 3년간 구술시험에 응시 가능하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실시한 의료통역 전문과정(200시간)을 수료한 자는 수료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필기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구술시험에 응시 가능

3 보수 교육

-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보수교육 실시(법 제13조 제2항)
 -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통역 제공인력 양성기관
 - (교육목적) 의료통역 직무역량 및 현장 문제해결력 강화
 - (교육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 소화기계, 성형·피부 등 전문영역별 의료통역 실기 심화, 의료통역 현장 사례별 해결방안 토의 등

참고 사항

-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합격자는 보건산업인력 통합 플랫폼 시스템(plat.kohi.or.kr) 인재정보에 등록하여 정기적인 보수교육 및 의료기관의 통역수요 정보 제공 예정

4 전문인력 양성 교육

-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실시(영 제13조 제2항)
 - (수행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hie.kohi.or.kr)에서 국제의료사업 및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행 중
 - (교육과정) 외국문화, 언어 등 국제역량을 갖춘 간호사, 의사, 의료기사 양성 및 국제 의료서비스, 마케팅, 해외의료시장, 의료경영 등 국제의료사업 직무별 교육
 - (신청방법) 전문인력 양성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수강 신청

<p>법률</p>	<p>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와 국내 의료인 간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 통역서비스 제공인력의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할 수 있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을 위하여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성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 양성기관의 지정의 방법·절차·대상·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해당 조문 없음</p>
<p>시행규칙</p>	<p>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행 일시, 시행 장소 및 시험과목 등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p> <p>③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구술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세부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p> <p>1. 필기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국제문화</p> <p>나. 의료서비스</p> <p>다. 병원시스템</p> <p>라. 기초의학</p> <p>마. 그 밖에 의료 통역능력의 검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p> <p>2. 구술시험: 다음 각 목의 사항</p> <p>가. 외국어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p> <p>나. 의료 지식</p> <p>④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구술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p> <p>1. 필기시험: 각 과목 총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p> <p>2. 구술시험: 구술시험 총점의 75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의 실시 절차, 실시방법 및 시험비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p> <p>2. 통역 서비스 제공인력 양성, 보수교육 및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p> <p>②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각각 갖추는 것</p>

2.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 및 장비를 각각 갖추는 것
3.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온라인 업무 처리시스템을 갖추는 것
4.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능력이 있을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내용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⑤ 양성기관은 분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수행 현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방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6. 벌칙 등

1 시정명령 사항

-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우회투자의 금지(제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22조 제1호)
- 유치기관 등록(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 제2호)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법 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22조 제3호)
- 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법 제10조)을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법 제22조 제4호)
- 보고의무(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22조 제5호)

2 등록의 취소 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혹은 유치의료기관이 등록된 유치업자, 유치기관이 아닌 곳에 소개, 알선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제4호)
- 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 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5호)
- 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6호)
- 법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7호)
- 법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 사후관리를 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8호)
- 법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법 제24조 제1항 제9호)

유의 사항

- (등록의 취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 제24조 제1항 9호에 따라 등록 취소 가능(임의조항)
- (등록의 취소) 1년간 재등록 금지(법 제24조 제2항)
- (등록의 취소)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규칙 제17조)
- (벌칙) 시정명령 미이행시, 법 제2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9조)
- (양벌규정) 위 벌칙규정 적용시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함(법 제30조)

법률	<p>제22조 (시정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5조를 위반한 경우 2.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증을 의료기관 내 또는 사업장 내에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하여 병상 수를 초과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 5.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p>제24조 (등록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경우 3.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을 소개·알선한 경우 4.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아닌 자에게 외국인환자와의 진료계약 소개·알선을 받은 경우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성명·상호 또는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한 경우 6.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 7. 제15조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의료광고를 한 경우 8. 제16조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 등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사전·사후관리를 한 경우 9. 제22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등록기간 중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 새로 시정명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p> <p>③ 등록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p>
시행령	<p>관련 조문 없음</p>
시행규칙	<p>제17조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등록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① 과징금 부과 대상(법 제11조)

- 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② 과징금 산정기준(법 제11조, 규칙 제14조)

- 미등록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법 제26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기준(영 제14조)
 - (미등록 기관으로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영 제14조 제1항 제1호)
 -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영 제14조 제1항 제2호)
- *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1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 가능

③ 과태료 부과 대상(법 제31조)

- 등록증, 환자 권리 미게시 혹은 외국인환자가 인지할 수 없는 상태(법 제31조 제1항 제1호)
- 보고의무(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 허위 보고(법 제31조 제1항 제2호)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 사용(법 제31조 제1항 제3호)

4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1호	50	75	100
나. 법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 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2호	50	75	100
다.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제3호	50	75	100

○ (위반행위의 횟수) 최근 1년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 시 적용

- * 위반횟수 계산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함

○ (과태료 감경)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

-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해당시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시
-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시
-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 시
- * (감경범위)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내 감경가능
- * (감경예외) 과태료 기 체납자

○ (과태료 가중)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이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정
- * (가중 상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음

<p>법률</p>	<p>제26조 (과징금)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31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시행령</p>	<p>제14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① 법 제26조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 유치행위를 한 자: 위반기간 동안 외국인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 2.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도한 수수료를 제공받은 자: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에 따라 실제로 제공받은 수수료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를 뺀 금액 <p>②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 또는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제16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p>
<p>시행규칙</p>	<p>관련 조문 없음</p>

법률	<p>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등록증,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외국인환자가 인지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사업실적을 허위로 보고한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규칙	관련 조문 없음

1 신고포상제 개관

- (수여자) 보건복지부장관(법 제27조 제1항)
- (포상자) 아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법 제27조 제1항)
- (포상범위) 예산 범위내
- (포상금 신청) 신고인·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영 제15조 제4항)
- (지급기간)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영 제15조 제5항)
- (지급액) (영 제15조 제6항)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최대 1천만원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최대 1천만원
 -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 최대 3백만원

2 포상사유

-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법 제27조 제1항 제2호)
-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7조), 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제9조), 의료광고에 관한 특례(제15조)를 위반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법 제27조 제1항 제3호)

3 포상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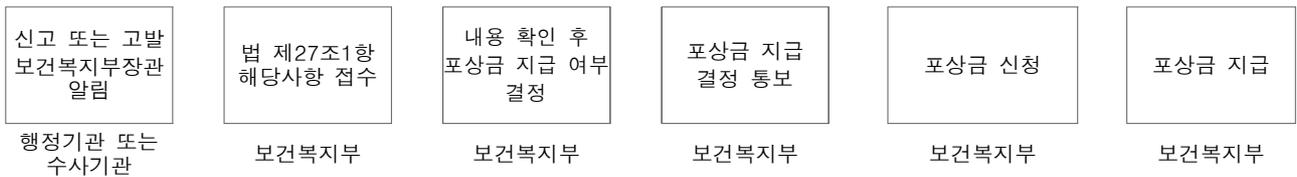
-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영 제15조 제2항 제1호)
-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영 제15조 제2항 제2호)
-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영 제15조 제2항 제3호)

4 신청 절차

○ (신고자포상금의 지급)(영 제15조)

- (신고 및 고발)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
- (접수) 보건복지부로 접수
- (검토)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 (포상금 지급 결정 통보)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림
- (포상금 신청)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을 신청
-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지급

< 포상금 신청 절차 >



5 포상금의 지급 기준

< 포상금의 지급기준 >

부정행위	포상기준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 또는 징수된 과징금액 중 높은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1,000만원으로 한다.
3.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다른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행위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2) 제9조제1항에 따라 유치 의료기관 또는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	그 사건으로 징수된 과징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3)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하거나 특정 진료과목에 편중된 의료광고를 한 행위	그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1만원으로 하고, 1명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p>법률</p>	<p>제27조 (신고자포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2.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 3. 제7조, 제9조, 제15조를 위반한 자 <p>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시행령</p>	<p>제15조 (신고자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p>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한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④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p> <p>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유치기관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1천만원 3. 법 제7조, 제9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3백만원 <p>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고발, 포상금의 지급 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시행규칙</p>	<p>관련 조문 없음</p>

담당자 연락처

사업명	기관명	소속부서	소속팀	담당자		
				성명	연락처	E-mail.
의료 해외진출 신고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의료해외 진출지원단	진출정보팀	민경민 팀장	043-713-8325	minkmin @khidi.or.kr
의료 해외진출 신고			진출기반팀	김택식 팀장	043-713-8360	tskim @khidi.or.kr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단	유치기반팀	김동현 팀장	043-713-8304	kdh77 @khidi.or.kr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	글로벌헬스케어 교육부		윤나비 부장	02-3299-1407	nbyoon @kohi.or.kr
벌칙 등	한국 보건산업 진흥원	외국인환자 유치지원단	유치기반팀	김동현 팀장	043-713-8304	kdh77 @khidi.or.kr